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3
----------	-----

제출연월일 : 2001년 8월 9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관련법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주소 변경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미징구 하는등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함.

 주요골자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어 도시개발법 적용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을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으로함.
- 주소등 변경신고시 첨부서류 미징구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호적등본 1통 제출 삭제함

 의안전문 : 따로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을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중 “법 제32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제48조 및 제51조”를 “법 제27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17조·제21조 및 제25조제1항중 “법 제56조”를 각각 “법 제34조”로 한다.

별지 5의 첨부서류 “별첨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 거소 변경시), 호적등본 1통(성명 변경시)”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제8조(환지면적의 기준) 환지를 지정할 토지의 면적은 법 제32조에 의한 사업 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의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환지면적의 기준)	-----	법 제11조
1.-2. (생략)		1.-2.(현행과 같음)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① 환지계획은 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한 절충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제48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한 환지로서 지정할 면적은 권리면적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위치 또는 종전의 토지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①	-----	법 제27조 및 제31조
② 내지 ④ (생략)		② 내지 ④(현행과 같음)		
제17조(토지의 관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는 당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7조(토지의 관리) 법 제34조	-----	

현행	개정안
<p>제21조(환지예정지지정)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21조(환지예정지 지정)법 제34조---</p> <p>-----</p> <p>-----</p> <p>-----</p> <p>-----</p>
<p>제25조(환지예정지사용)①법 제56조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에 의한 신청서를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25조(환지예정지 사용)법 제34조----</p> <p>-----</p> <p>-----</p> <p>-----</p> <p>-----</p> <p>②-③(현행과 같음)</p>